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11
----------	-------

발의연월일 : 2025. 9. 2.

발 의 자 : 이용우 · 진성준 · 박홍배
맹성규 · 박 정 · 이학영
정혜경 · 서영석 · 김태선
박해철 · 김남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호우와 폭염·한파 등이 빈번해지면서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지속적으로 수치예보 기술을 발전·보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은 수학, 물리 등 기초과학과 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거대 소프트웨어로 개발 및 운영과정에 많은 전문인력과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946억원을 투입하여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을 운영하였고, 2020년에 시작하여 2026년에 종료되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운영에 총사업비 1,023억원을 투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치예보 기술개발 추진 방식이 한시적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한 사업이 종료되면 독

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및 전문인력의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 안정적인 전문인력 육성을 전담할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수치예보기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등).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기상청장은 수치예보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수치예보모델 개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⑤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 ----- ----- ----- ----- <u>말한다. 이하 같다</u> ----- ----- ----- ----- ----- -.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u>기상청장은 수치예보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치예보모델 개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u><신 설></u>	④ <u>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u>

<u><신 설></u>	<u>⑤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